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37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717호)	김위상	2024. 9.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 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978호)	김태선	2024. 9.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 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215호)	강득구	2024. 11. 4.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2025.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309호)	임이자	2024. 11. 6.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2025.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0.)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11.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 또는 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생태계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술개발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연구·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개발기술 등

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치 · 규모 · 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 · 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市) 또는 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나.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

한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등  
의 주체로 추가함(안 제36조)

다.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추가하고, 생태통로 조사결과를 관리대장 기록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라.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3).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경우 관할 구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면적 비율이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생태계”를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 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 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 단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를 각각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10까지로 하고, 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5조의5(종전의 제45조의4)제1항 중 “제45조의3제3항”을 “제45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45조의4)제6항 중 “제45조의3제3항”을 “제45조의4제3항”으로 하며, 제45조의8(종전의 제45조의7)제2항 전단 중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을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을”로 하고, 제45조의10(종전의 제45조의9)제1항제1호 중 “제45조의7”을 “제45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8”을 “제45조의9”로 한다.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통로 설치·관리자
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
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정보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생태통로 설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군수

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수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각각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  
-----  
-----  
-----  
-----.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 활용) ①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

<p>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u>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u></p> <p><u>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p>제36조(자연환경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u></p>
--	---

	<u>수 있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u>
<u>&lt;신설&gt;</u>	<u>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u>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다만, 생태통로 설치 · 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 · 관리자에게 개선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 ·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  
-----  
-----  
-----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 ·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 · 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통로 설치 · 관리자  
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

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p><u>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u></p> <p><u>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u>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생략)</u>	<u>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현행 제45조의3과 같음)</u>
<u>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u>	<u>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제45조의4제3항-----</u>



	같음)
<u>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생략)</u>	<u>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u>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 하는 경우 <u>제45조의4 및 제45 조의5</u>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 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 간”으로 본다.	② ----- ----- ----- <u>제45조의5 및 제45 조의6</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 업 인증) (생략)</u>	<u>제45조의9(우수 자연환경복원사 업 인증) (현행 제45조의8과 같 음)</u>
<u>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의 지정 · 운영)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 업의 효율적 운영 · 관리를 위 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 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u>제4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 터의 지정 · 운영) ① ----- ----- ----- ----- ----- ----- ----- ----- ----- ----- ----- ----- ----- ----- ----- -----.</u>
1. <u>제45조의7에 따른 민 · 관 협 의체 구성 · 운영, 자연환경복 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 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u>	1. <u>제45조의8----- ----- ----- ----- ----- ----- ----- ----- ----- ----- ----- ----- ----- ----- ----- -----</u>

2. <u>제45조의8</u> 에 따른 우수 자연 환경 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 무	2. <u>제45조의9</u>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